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241
----------	-------

발의연월일 : 2026. 1. 22.

발 의 자 : 이해식 · 허 영 · 박상혁
윤준병 · 문진석 · 박용갑
서영석 · 차지호 · 한민수
서영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지지도 조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선호도 조사, 정책 평가 등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선거운동기간 뿐 아니라 평소에도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활용도와 영향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실시한 위법한 선거여론조사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거운동과 관련이 없는 위법한 선거여론조사에 대해서는 규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거여론조사의 위법행위 처벌 요건에서 ‘선거운동과의 관련성’ 요건을 삭제하여 선거여론조사 전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256조제3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6조제3항제1호과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08조제1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하여 보도한 자,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 같은 조 제9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0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 ② (생 략)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 타. (생 략) 파. 제108조제1항을 위반하여 <u>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u> <u>를 공표 또는 인용하여 보도한 자,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 같은 조 제9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u>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 --- 가. ~ 타. (현행과 같음) <u><삭 제></u>

<u>10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u> <u>를 한 자</u> 하. ~ 너. (생 략) 2. · 3. (생 략) <u><신 설></u> 4. (생 략) ④ · ⑤ (생 략)	하. ~ 너. (현행과 같음) 2. · 3. (현행과 같음) 4. <u>제108조제1항을 위반하여 여</u> <u>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u> <u>공표 또는 인용하여 보도한</u> <u>자,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u> <u>여론조사를 한 자, 같은 조 제</u> <u>6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와</u> <u>관련 있는 자료일체를 해당</u> <u>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u> <u>보관하지 아니한 자, 같은 조</u> <u>제9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u> <u>유 없이 여론조사와 관련된</u> <u>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u> <u>또는 같은 조 제10항을 위반</u> <u>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u>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	--